

## 2001.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자료

질문위원	이상은 의원	소관부서	세 무 과
실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압류해제내역 자료중 연번 13번과 212번의 감액사유</li> <li>○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 관련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영어패럴, 영일부탄가스, 한전복합건설처의 사업소세 환부사유등</li> <li>- 200만원이상 체납자 금융자산조회이후 조치내역</li> <li>-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실적</li> </ul> </li> <li>○ '99년이후의 변호관 영치실적과 징수실적 및 변호관 보관현황</li> <li>○ 사업소세 과세대상 조정방안에 대한 업무연관 내용</li> <li>○ 2001년도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조치 현황</li> </ul> </li> <li>○ 무단방치차량의 공매처분으로 구 세입증대 할 수 있는 방안</li> <li>○ 2001년 차량공매 현황</li> <li>○ 장애인 소유차량 일제조사 및 추정현황</li> <li>○ 외국인 지방세 과징 및 체납현황</li> <li>○ 2000년과 2001년의 고지서 송달율 및 징수율</li> <li>○ 세외수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현황</li> <li>- 연도별('99~2001) 징수실적</li> <li>- 부서별 징수실적 및 보고회 개최실적</li> </ul> </li> </ul>		
답변내용	불 입		

### 2001.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자료

질문위원	최영만 의원	소관부서	세 무 과
질문내용	○ 구세 연도별 체납현황('99년~2001년)		

《답변내용》

○ 구세 연도별 체납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99년도				2000년도				2001.10월말 현재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
계	21,134	19,771	1,363	93.5	21,908	20,623	1,285	94.1	19,722	18,013	1,709	91.3
면허세	2,313	2,109	204	91.2	2,329	2,126	203	91.3	489	466	23	95.2
재산세	5,644	5,343	301	94.7	6,018	5,771	247	95.9	6,069	5,825	244	96.0
종토세	10,511	9,709	802	92.4	10,556	9,759	797	92.5	10,450	9,024	1,426	86.4
사업소세	2,666	2,610	56	97.9	3,005	2,967	38	98.7	2,714	2,698	16	99.4

※ 과년도 체납세의 증가산금 조정에 따른 체납발생분은 제외한 자료임.

○ 구세 총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99년도				2000년도				2001.10월말 현재			
이월	신규	정리	최종	이월	신규	정리	최종	이월	신규	정리	최종
4,846	1,363	1,607	4,602	4,602	1,285	3,560	2,327	2,327	1,709	384	3,652

※ 2001년 10월말 현재 종합토지세 미수납액에 대한 집중 독려활동 전개 및 2001회계년도말(2002.2월)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월체납세를 최소화하겠음.

### 2001.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자료

질문위원	이모영 의원	소관부서	세 무 과
질문내용	2001년도의 고액채납자 관리카드 작성현황		

《답변내용》

- 2001년 10월말 현재 1천만원이상 고액채납자는 318명 14,529백만원이며, 이들 고액채납자 대부분은 사업부도 등으로 재산이 경매진행 중이거나 경매종료후 채권액 미해결로 재산정리가 되지 않아 발생되었음.
- 2001년도에 신규 발생된 1천만원이상 고액채납자는 60명 10,866백만원으로 이들에 대한 채납자 관리카드는 모두 작성되어 재산조회 등을 통한 수시 재산변동사항 확인 및 생활실태, 납부가능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납부독려 사항을 관리하는 등 채납세 정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부동산압류해제내역('99~2000) 자료중 연번 13번과 212번에 대하여 감액후 압류해제한 사유

- 연번 13번(지전무) 감액 및 환부사유 : 압류일 '90.5.21 해제일 '99.3.12 압류물건인 괴정동 1033-2번지 토지는 동기부상 1941년부터 일본인 소유토지로 1948년 9월 11일 국가로 권리귀속이 되고 1999년 1월 13일 國으로 동기이전되어 재무과의 재무41320-257('99.2.18)호의 요구로 체납액 1,576천원 전액 감액조치후 압류해제하였음
- 연번 212번(조중제) 감액 및 환부사유 : 압류일 2000.6.9 해제일 2000.9.27 서부산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자료통보('99.2.20)에 의거 '99.4.30납기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였으나, 체납하여 재산추적중 2000.6.9 소유재산 확인 압류하였음  
서부산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로 감액통보(2001.9.18)함에 따라 부가세목인 주민세 1,117천원 전액 감액하여 압류해제함.

□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 관련질의

- 사업소세 환부내역 자료에서 부영어패럴, 영일부탄가스, 한전복합건설처의 사업소세 환부사유와 본사소재지 및 지점현황, 신고납부시와 현재의 종업원 현황 등

업 체 명	종 업 원 수		환 부 사 유
	신 고 납부시	환부시	
부영어패럴			종업원할 사업소세 비과세대상 급여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과세표준에 산입, 과다신고 납부함으로써 과오납된 32건 3,897천원 환부조치
영일부탄가스	51	47.7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은 월통상인원(수시고용인원/일수)으로 종업원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상시고용하는 종업원으로 착오신고하여 납부함으로써 과오납된 7건 2,079천원 환부조치
한전복합건설처	77	48	'99.2월~5월 당해 사업장 종업원수가 48명이었으나, 창원기자재검사팀 29명을 포함하여 77명에 대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오납된 4건 3,834천원 환부조치

- 200만원이상 체납자 금융자산조회이후 조치내역

2000년도에 200만원이상 체납자 1,920명에 대하여 금융자산조회 결과 2000년 12월 15일까지 1,777명은 예금없음 통보되었으며, 조회결과 금융자산 소유자로 회신된 143명에 대하여 183계좌 108,643천원을 2000년 12월 19일까지 압류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실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실시하여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하였으나 고액고질 체납자로 추정되는 김만두(사하구 당리동 17-2번지)등 20여명을 현장출장 하여 실태 조사한 결과 가정형편이 어렵고 전국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자로 판명이 되었으나 일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등에서 선순위 채권확보 등기로 인하여 실익이 없는 것들이었고 또한 이들을 지방세 체납으로 형사고발 하여도 체납액 징수가능성이 없고 사업실패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 형사고발 예고조치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 '99년이후의 변호관 영치실적과 징수실적 및 변호관 보관현황

연도별	영치건수	반환건수	징수금액(백만원)	보관건수	비 고
계	4,557	4,140	2,225	417	
1999년	1,551	1,450	692	101	
2000년	1,458	1,349	722	109	
2001년	1,548	1,341	811	207	11.30현재

□ 사업소세 과세대상 조정방안에 대한 업무연찬 내용 : 별첨참조

□ 2001년도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조치 현황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은 2000년 137명, 2001년 145명 추진 하였으며, 신용불량등록은 2000년에 3회 276명을 2001년에 2회 50명을 추진 하였으나 출국금지조치는 비자심사, 출국심사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 무단방치차량의 공매처분으로 구 세입증대 할 수 있는 방안

무단방치차량은 차량연식이 오래되거나 주행거리가 많아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고 매매, 폐차말소등록등 소유권을 이전 시킬만한 가치가 없어 (폐차시 체납세 완납부담등) 버려진 것으로 이를 공매추진시 공매를 위한 차량감정비, 견인비, 차량보관료등의 체납처분비를 회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량을 인터넷공매를 한다면 체납처분에 따른 구 예산낭비와 무단방치에 대한 벌금 500,000원을 면제시키는 특혜를 주게 되며 납세자들이 자동차세 체납후 차를 무단방치하면 구청에서 처리해 준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더욱 많은 체납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01년 차량공매 현황

2001년도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차량공매 실적은 3회 13대를 실시하여 22,450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공매대상차량은 대부분 법인소유 차량이며, 개인소유차량도 차량소유자가 공매를 희망할 경우 차량연식 오래되지 않아 실익이 있는 것은 공매처분을 하고 있음

## □ 장애인 소유차량 일제조사 및 추징현황

## ▷ 장애인 관련 감면자 발체 자료 대사

- 기간 : 연중
- 조사요령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자료 열람후 사망자 확인

⇒ 상속인에게 감면된 세액 추징 및 명의변경토록 유도

— 감면조례 개정(2000.3.16)이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의 공동명의 등록자중 장애인이 아닌 등록명의자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유권 이전한 사례

※ 부득이한 사유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등

— 조사결과 추징 현황

( 단위 : 건, 천원 )

구	분	합 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비 고
합 계	건 수	199	57	57	73	12	
	세 액	29,201	7,116	15,049	6,745	291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	건 수	8			4	4	
	세 액	491			394	97	
장 애 인 감면차량	건 수	191	57	57	69	8	
	세 액	28,710	7,116	15,049	6,351	194	

## — 금후추진계획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자료 수시열람 사망자 확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의 공동명의 등록자중 수시 세대분가 확인  
⇒ 사망 및 세대분가 확인시 즉시 부과 조치

외국인 지방세 과징 및 체납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부 과(A)		징 수(B)		미수납(A-B)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220	71,557	199	70,804	21	753
2001	88	31,592	74	31,163	14	429
2000	69	25,898	64	25,651	5	247
'99	63	14,067	61	13,990	2	77

※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해당

2000년과 2001년의 고지서 송달율 및 징수율

연도별	송달율	징수율	비 고
2000년	99.3%	93.4%	2000. 11. 30 기준
2001년	99.4%	93.6%	2001. 11. 30 기준

세외수입 관련

-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 운영 현황

상반기 : 2001. 6. 1 ~ 2001. 8. 31(3개월)

하반기 : 2001. 12. 1 ~ 2002. 1. 31(2개월)

- 연도별('99~2001) 징수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연간예산액	부과액(A)	징수액(B)	미수납액	징수율(B/A)	비 고
계	57,112,502	107,547,437	76,897,094	30,650,343	71.5	
1999	17,344,915	35,932,050	26,965,379	8,966,671	75.0	
2000	17,768,806	39,652,863	29,339,683	10,313,180	73.9	
2001	21,998,781	31,962,524	20,592,032	11,370,492	64.4	



## - 부서별 징수실적 및 보고회 개최실적

## ○ 보고회 2회 개최(자료 별첨)

상반기 : 2001. 4. 19

하반기 : 2001. 11. 23

## ○ 부서별 징수실적(2001. 10. 31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인간예산액 (A)	부과액	징수액 (B)	세입율 (B/A)	결산전망액	비고
계	21,998,781	31,962,524	20,592,032	93.6	22,383,366	
총 무 과	125,000	142,661	125,022	100.1	170,937	
재 무 과	567,292	1,528,181	515,882	90.9	627,275	
세 무 과	3,658,864	3,200,962	3,200,962	87.4	3,758,675	
문화공보과	173,000	186,137	182,787	105.6	187,787	
사회복지과	101,485	417,026	79,676	78.5	114,640	
환경청소과	4,526,500	4,407,938	4,199,906	92.7	4,705,840	
지역경제과	123,000	123,332	106,287	86.4	135,694	
교통행정과	257,700	4,093,522	331,000	128.4	432,199	
건 설 과	1,850,775	1,815,134	1,649,691	89.1	2,558,930	
도시개발과	142,000	-	-	-	42,000	
허가민원과	260,000	5,090,213	471,456	181.3	561,456	
지 적 과	206,952	345,946	75,833	36.6	169,864	
보 건 소	578,000	551,309	511,309	88.4	602,085	
기 타	9,428,213	10,060,163	9,142,111	96.9	8,315,984	

※ 순세계잉여금, 이월금등 기타포함

2001년 연찬회 발표자료

2001. 4월

##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조정방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사업소세는 산업의 발전과 사회의 다원화 등에 따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76년 신설된 목적세이나, 현재 사업소세에 관한 세율체계 및 면세점이 '84. 12. 24 개정된 후 17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산업구조 및 사회·경제적 제반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특히 직업의 다양화와 공해산업의 확대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처리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몇차례의 국제행사등을 치름으로써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와 행정적 수혜에 대한 요망도 커지고 있어, 현재의 재원만으로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종업원할사업소세 과세대상이 50인초과 사업장에만 한정하여 현재 다수생겨나고 있는 금융·보험업, 유통업 및 벤처기업과 같은 소규모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세점이하가 되어, 과세되는 사업주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과세대상 사업장의 종업원의 입장에서도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향후 산업형태가 소규모인원의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변화되므로 이에 대한 과세대상조정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금융, 보험업등과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벤처산업등의 대두는 각종 사회적 제반비용의 발생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으로 분류되는 등의 불합리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검토에 있어 재산할과 종업원할사업소세중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대상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하기로 한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과거 산업이 종업원의 인원수에 따라 기업의 대소가 나뉘던 때와는 달리 현재는 작으면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얻고 있으며, 많은 행정적 수혜와 각종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기업들이 많아짐에 따라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향을 모색하고, 또한 사업소세가 목적세인 점을 고려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조사대상에 있어서는 사하구를 표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각종 통계나 자료등은 부산시나 전국단위를 인용하기로 한다.

## II. 현실태 및 문제점

### 1. 사업소세 과징현황(전국 6대도시)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징수율
서울	96,792,077	96,039,475	99.2
부산	19,510,573	19,190,874	98.4
대구	11,917,902	11,659,824	97.8
인천	17,798,365	17,472,315	98.2
광주	7,097,296	6,968,784	98.2
대전	9,158,539	9,038,929	98.7
울산	21,372,219	21,289,957	99.6

### 2. 종업원할 사업소세 업종별 분류(사하구)

구 분		계	제조	건설	숙박 음식	운수	금융 보험	통신 벤처	교육	기타
사 업 체 수	50인초과 (현행)	260	199			35	3	6		17
	20인초과 50인이하	369	313	2	3	2	2	3	3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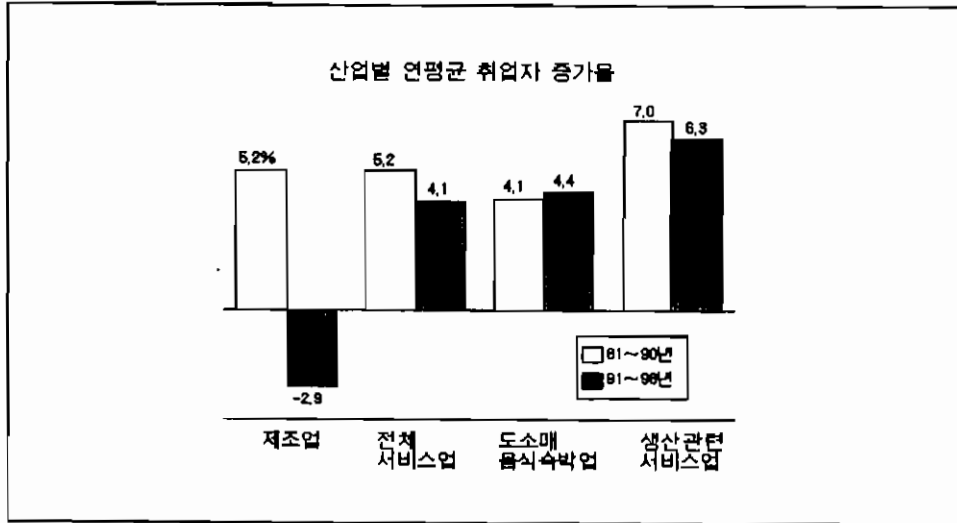
### 3. 지방세 주요세목별 과징현황

(전국 1999년 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소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부과액	351,077	3,249,653	4,346,536	256,836	338,214	2,887,060	710,965	1,330,225	2,183,304	828,120
징수액	346,725	3,065,411	4,326,677	237,393	316,112	2,548,181	669,908	1,242,088	1,936,392	785,013
징수율	98.8	94.3	99.5	92.4	93.5	88.3	94.2	93.4	88.7	94.8

## 자료1. 산업별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

(주간경제 521호, '99. 6. 2)



- ☞ 제조업에 있어 '90년 이전에는 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90년 이후에는 오히려 2.9%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 자료2. 제조업 규모별 부가가치와 종업원수

(전국 '99년기준, 단위(업체수제외):백만원)

산업	업체수	부가가치 (업체당)	기술투자 (업체당)	부가가치 (1인당)	종업원수 (평균)	
제조업	계	1,000	2,337.5	260.5	32.1	72.9
	10~19인	130	358.3	79.2	23.9	15
	20~49인	361	963.8	137.4	27.2	35.4
	50~299인	509	4,113.4	415.2	33.3	122.7

- ☞ 제조업에 있어서는 기업이 클수록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음

## 자료3. 산업별 임금비교

(전국 2000년 기준, 상용직 월평균임금)

산 업 별	평균임금	임금비율(제조업기준)
제 조 업	1,601,468	100
전 산 업	1,727,339	107.8
건 설 업	1,839,844	115
운수·통신업	1,771,483	110.6
금융·보험업	2,448,142	153
사회·개인서비스업	1,889,140	117.9

## 자료4.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특성(1995년 기준)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매출액	1,768억5백만원	16억8천만원	51억6천만원
매출성장율	22.3%	15.9%	40.4%
영업이익율	9.8%	4.6%	14.5%
자기자본비율	20.8%	27.2%	18.8%

자료 : 김선홍(1997), 벤처산업의 특성과 발전전망, 159개업체

## 자료5. 종업원규모별로 본 벤처기업

('97년 5월 기준)

인원수	1~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비율(%)	16.3%	27.6%	19.2%	30%	6.9%

#### 4. 문제점

##### (1) 국민경제에 있어 2, 3차 산업의 비중 및 역할 증대

산업의 다원화로 2, 3차산업의 양적증가와 질적상승으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행정수혜자가 늘어나고, 더많은 급부 행정의 필요성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 (2) 각종 공해, 환경문제의 심각화

산업의 발달에 따른 환경, 공해, 소음문제등이 심각해져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재정수입의 필요성 대두

##### (3)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따른 재정 위기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국화 됨에 따라 도로, 항만, 상하수도 및 각종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부족현상

### Ⅲ. 과세대상범위의 확대방안

중업원할사업소세 과세대상범위의 확대가 현대산업사회 경제구조상 적합하다고 보아지나, 현재의 경기침체등으로 인한 사업주등의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조세저항을 극소화하고 사업소세의 특질인 응익과세의 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 및 기업간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중업원할 사업소세 면세점의 인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개요

현재의 지방세법상의 중업원할사업소세 면세점은 중업원 50인이하로서, 50인 초과사업장에만 과세하고 있으나, 최근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소규모이면서 단위생산성이 높고, 재정규모 및 사회적 비용발생이 큰 사업장등이 대두함에 따라 '84년 개정된 면세점규정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중업원 20인이하 사업장으로의 면세점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 벤처기업 현황

(부산시, 2000. 6월 기준)

유형	계	기계, 금속	섬유, 화학	전기	영상 관련	자동차	의료 정밀	정보처리 (컴퓨터)	기타
업체수	470	156	42	68	18	14	16	80	76

## ☞ 벤처기업현황 참고분석

- ① 고용인원 : 21,190명
- ② 1업체당 고용인원 평균 : 46명(면세점 이하)
- ③ '99년말(345개업체) 대비 6개월간 업체증가수 : 125개(증가비율 : 36%)

## 2. 종업원할 사업소세 세수추계(사하구)

2000년 종업원할사업소세 기준시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체수	종업원수(연인원)	과세표준	사업소세추계액
20인초과~50인 이하	4,428	139,476	184,108,320	920,541
50인초과(2000년 부과)	2,985	117,258	446,029,100	2,230,145

## 3. 면세점 인하에 따른 문제점

순수한 종업원수에 따른 면세점인하시, 사실상 영세하며, 후진기업(예:봉제, 신발, 기초금속등)의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되고, 단위당 생산원가의 인상으로 국제경쟁력 약화와 해당산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한 소수 인원의 벤처기업이나 첨단산업 및 금융·보험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면세점이하일 수 있으며 따라서 형평성 문제와 경기하락으로 인한 체납발생의 가능성도 있음.

## IV.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면세점 인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 귀결일 수 있으나, 일률적 기준으로 정할 때, 위에서 본바와 같은 문제점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조건으로 종업원급여총액을 반영하여 일정금액이상으로 한다든지, 자산총액이 일정기준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 가지 제반사정과 지역별 산업형태나 구조도 차이가 나므로 결국은 획일적 기준의 종업원수에 따른 면세점 기준이 제일 무난할 듯하다. 또한 사하구의 예를 볼 때, 종업원수 20인이하로 면세점을 정하면, 세수추계액은 지방세중 구세의 약5%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와 같은 불경기속에서 바로 실시한다면 조세저항으로 인한 마찰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영세한 사업장에 있어서 종업원할사업소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종업원개인의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면세점으로서 최저임금액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액(2001년도 최저임금액 ▷ 시간급 : 1,600원, 일급 : 12,800원, 월급 : 361,600원)을 면세점으로 추가하고,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좋을성 싶다.

그리고 흔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업종에서의 설계사와 같이 실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된 경우에도 조사하여 과세하는 방법등도 현대두리내에서의 사실상 과세대상범위가 확대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담당	장	국장	부청장	청장	결재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전경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2001. 1/4分期

# 세 외 수입 징수 실적 보고 자료

- 일시 : 2001. 4. 19. 09:00
- 장소 : 상황실
- 주제 : 부구청장
- 참석(보고자) : 분임징수관(실과장)
- 내용
  -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 목표액달성 전망(문제점)및 대책

稅 務 課

# 稅外收入 徵收 推進 狀況

□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세입예산(목표액)		부과액	징수실적			
	년간	1/4분기		채납분	당해분	계	목표대비
계	18,900	7,894	9,315	342	7,799	8,141	103.1
구세외	15,819	6,486	6,122	266	6,424	6,690	103.1
시세외	1,881	1,108	2,752	18	1,147	1,165	105.1
주정차	1,200	300	441	58	228	286	95.3

□ 총평

99년  
과년도 세입액 13,119 백만원

- 1/4분기 세입예산목표액 7,894백만원 대비 실제 징수실적은 8,141백만원으로 3.1% 초과 달성하였으나 부과대비 징수실적은 87.3%로 저조하여 채납액(15,671백만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구세외수입은 '2000 시세징수교부금 정산분 187백만원 추가교부로 3.1% 초과달성하였음
- 시세외수입은 현년도 도로사용료 64백만원 초과징수 등으로 5.1%를 초과달성하였음
- 목표액 달성(초과)부서
  - 총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보건소
- 목표액 미달부서
  - 재무과, 문화공보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지적과

□ 추진상 문제점

- 세외수입은 소액과태료등 부과대상이 많아서 자진납부 않을시에 채납처분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이행강제금 채납자들은 대부분 영세서민들이고 매년 반복부과 되어 납부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

□ 향후 추진 계획(대책)

- 세외수입 부과시 완벽한 부과자료 확보 및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
- 채납원의 정밀분석, 징수가능여부 판단 및 자료관리 철저
  - 유자산자 채납처분 강화 : 예금압류,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압류등
  - 무재산, 시효소멸등 실익이 없는 채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 세외수입 업무추진 실적 평가 (시책년)
  - 년2회(상반기, 하반기), 우수부서 시상

우수부서

## 徵收官 部署別 推進 狀況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목표액)		부과액	징수실적				채납액
	년간	1/4분기		채납분	당해분	계	목표대비	
계	18,900	7,894	9,315	342	7,799	8,141	103.1	15,671
총무과	125	31	31	16	15	31	100.0	17
재무과	575	117	119	8	107	115	98.2	1,375
세무과	7,648	4,507	4,666	-	4,666	4,666	103.5	-
문화공보과	311	119	166	10	81	91	76.4	204
사회복지과	68	18	21	7	12	19	105.5	397
환경청소과	4,711	1,159	1,316	26	1,259	1,285	110.8	202
지역경제과	23	4	3	-	3	3	75.0	13
교통행정과	1,422	355	743	250	89	339	95.4	7,678
건설과	2,912	1,475	1,841	8	1,426	1,434	97.2	1,041
도시개발과	142	-	-	-	-	-	-	-
허가민원과	260	21	275	15	11	26	123.8	4,542
지적과	203	47	42	2	40	42	89.3	195
보건소	500	41	92	-	90	90	219.5	7

※ 채납액 정리활동 강화 대상부서 - 재무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 2001. 1/4분기 세외수입 추진실적 보고서

### - 총무과 -

#### □ 2001회계년도 세입현황

2001. 3. 31현재(단위 : 건, 천원)

과 목	연간예산액 ㉑	월별예산액 ㉒	부과액	징수액 ㉓	세입률 ㉓/㉒
합 계	91,104	22,776	890 / 15,037.5	871 / 14,287.5	62.7
테니스장 사 용 료	6,000	1,500	559 / 832.5	559 / 832.5	55.5
체육시설업 신고(증지)	480	120	5 / 100	5 / 100	83.3
주민등록과태료	84,624	21,156	326 / 14,105	307 / 13,355	63.1

#### □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

2001. 3. 31현재(단위 : 건, 천원)

과 목	연간정리액 ㉑	월별정리액 ㉒	정리액			정리율 ㉓/㉒
			계㉓	징수㉔	결손㉕	
합 계	34,150	8,535	127 / 16,950	8 / 300	119 / 16,650	198.5
주민등록 과태료	7,500	1,875	8 / 300	8 / 300	0	16
민방위 과태료	26,650	6,660	119 / 16,650	.	119 / 16,650	250

## 2001. 1/4分期 稅外收入 推進實績 報告書

- 재 무 과 -

### □ 2001회계년도 세입현황

2001.3.31현재 (단위 : 건, 천원)

과 목		연간예산액 (A)	월별예산액 (B)	부과액	징수액(C)	세입율(C/B)
합 계	건 수	2,237건	91건	93건	86건	
	금 액	522,792	109,243	111,743	107,152	98%
대부료 수입	건 수	70	16	16	16	
	금 액	139,600	35,163	35,163	35,163	100%
매 각 수입	건 수	30	6	6	6	
	금 액	174,692	48,229	48,229	48,229	100%
변상금 수입	건 수	2,117	55	57	50	
	금 액	200,000	23,251	23,311	18,720	80.5%
기 타	건 수	20	14	14	14	
	금 액	8,500	2,600	5,040	5,040	336%

### □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

2001.3.31현재(단위 : 건, 천원)

과 목		연간정리액 (A)	월별정리액 (B)	정리액			정리율 (C/B)
				계(C)	징수(D)	결손(E)	
변 상 금	건 수	380건	31건	33건	33건	0	
	금 액	53,000	7,950	8,010	8,010	0	101%

### □ 우수사례

#### 1. 보존부적합 재산 적극적인 매각으로 구수입 증대

- 1 단계로 총 30건 발굴하여 기매각 6건, 관리계획 승인신청 등 조치중 24건
- 계속해서 매각대상재산 발굴하여 매각추진
-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해당 민원인에게 매수권장

#### 2. 체납변상금 징수독려반 운영

- 과직원으로 담당구역 할당, 복명서 징구

#### 3. 체납고지서 전산발급 시스템구축중(공공근로요원 활용)

- 이자계산등 수기발급으로 고지서 발급시간 과다소요되어 독촉장 발급애로(기피)
- 전산발급으로 독촉장 발급횟수 확대(수시독촉)

# 2001. 1/4分期 稅外收入 推進實績 報告書

- 사회 복지 과 -

## 2001회계년도 세입현황

2001. 3. 31현재(단위 : 건 / 천원)

과 목	연간예산액 (A)	월별예산액 (B)	부과액	징수액 (C)	세입율 (C/B)
합 계	852 / 28,285	271 / 8,721	427 / 14,128	413 / 12,757	146%
사하여성회관 사용료수수료	160 / 12,485	40 / 3,121	76 / 6,128	63 / 5,757	184%
사하여성회관 증지수입	690 / 13,800	230 / 4,600	350 / 7,000	350 / 7,000	152%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2 / 2,000	1 / 1,000	1 / 1,000	0	0%

##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

2001. 3. 31현재(단위 : 건 / 천원)

과 목	연간정리액 (A)	월별정리액 (B)	정 리 액			정리율 (C/B)
			계(C)	징수(D)	결손(E)	
합 계	32 / 40,000	8 / 10,000	7 / 7,000	7 / 7,000	-	70%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32 / 40,000	8 / 10,000	7 / 7,000	7 / 7,000	-	70%

##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 주요 추진사항

○ 독촉고지서 발송 - 180건(명)

※ 체납자중 재산보유자 압류실시

▷ 기압류 46건 124,000천원(부동산26건86,000천원, 자동차20건38,000천원)

▷ 압류처리중 11건 29,000천원(부동산11건 29,000천원)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형사처벌(주 벌금형)과 행정처벌(과징금)의 양  
별규정에 따른 과중한 부담감으로 과징금 납부회피

○ 위반자의 70~80%가 영세업소 및 재산 미소유자로 납기내 징수 및  
체납액 정리가 곤란함

○ 세외수입 담당직원의 전문성결여

▷ 체납액 전담부서 업무이관 검토 및 담당직원 업무연차 수시 실시

# 1/4분기 세외수입 추진실적보고

- 환경청소과 -

## □ 2001회계년도 세입현황

2001. 3. 31현재(단위 : 천/천원)

과 목	연간예산액 (A)	1/4분기 예산액 (B)	부과액		징수액 (C)		세입률 (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711,800	1,159,400	4,688	1,316,669	4,527	1,259,869	109
쓰레기봉투판매수입	3,976,000	994,000	2,262	1,026,058	2,262	1,026,058	103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320,000	80,000	464	122,620	464	122,620	153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223,000	37,200	-	42,817	-	42,817	115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75,600	18,900	-	27,800	-	27,800	147
대형폐기물수거처리수수료	50,400	12,600	1,645	11,221	1,645	11,221	89
공해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6,300	1,575	-	7,003	-	7,003	445
폐기물무단투기과태료	35,000	8,750	284	24,250	143	13,100	150
환경관련과태료(매연,정화조)	25,500	6,375	33	54,900	13	9,250	145

## □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

2001. 3. 31현재(단위 : 천/천원)

과 목	연간목표액 (A)	1/4분기 목표액 (B)	정리액			세입률 (C/B)
			계(C)	징수(D)	결손 (E)	
합 계	1,062 / 163,247	267 / 55,812	157 / 42,350	157 / 42,350	-	76
폐기물무단투기과태료	743 / 50,755	186 / 12,689	143 / 13,100	143 / 13,100	-	103
환경관련과태료 (매연,정화조)	318 / 92,492	80 / 23,123	13 / 9,250	13 / 9,250	-	40
기타잡수입(과징금)	1 / 20,000	1 / 20,000	1 / 20,000	1 / 20,000	-	100



## 2001. 1/4分期 稅外收入 推進實績 報告書

- 지역경제과 -

## □ 2001회계년도 세입현황

2001. 3. 31현재

과목	연간예산액 (A)	월별예산액 (B)	부과액	징수액 (C)	세입률 (C/B)
합계	61건 20,218천원	13건 3,725천원	13건 3,725천원	9건 3,430천원	92%
기타사용료 (어항사용료)	3건 5,600천원	0	0	0	0
기타수수료 (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	4건 3,387천원	1건 215천원	1건 215천원	1건 215천원	100%
기타수수료 (산림전용부담금수수료)	4건 2,000천원	0	0	0	0
과태료	50건 9,231천원	12건 3,510천원	12건 3,510천원	8건 3,215천원	92%

## □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

2001. 3. 31현재

과목	연간예산액 (A)	월별예산액 (B)	정리액			정리율 (C/B)
			계(C)	징수(D)	결손(E)	
합계	19건 3,420천원	4.75건 855천원	1건 150천원	1건 150천원	0	18%
과태료	19건 3,420천원	4.75건 855천원	1건 150천원	1건 150천원	0	18%

※ 체납정리예산액(19건 3,420천원) = 총체납액(26건 12,685천원) - 압류조치액(7건 9,265천원)

체납내역 - 25건 12,535천원

- 기 압류조치 : 7건 9,265천원
- 미조치 체납액 : 18건 3,270천원

(단위 : 천원)

위반내용	건수	금액	체납사유	비고
합계	25	12,535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5	8,150	자금부족	
어선 및 수산업법 위반	13	3,065	자금부족	
계량 및 경제관련법 위반	3	230	소재불명	
농산물관계법 위반	3	90	소재불명	
산림법 위반	1	1,000	폐업	

향후 조치계획

- 총 체납건수 : 25건 12,535천원
  - 기 압류조치 (7건 9,265천원) : 공매처분전 납부 독려
  - 미 압류분 (18건 3,270천원) : 전화독려 및 독촉장 발송

## 2001. 1/4分期 稅外收入 推進實績 報告書

- 교통행정과 -

## □ 2001회계년도 세입현황

2001. 3. 31현재(단위 : 건,천원)

과 목		연간예산액 (A)	분기예산액 (B)	부 과 액	징수액 (C)	세입율 (C/B)
계	건수			8,688	2,410	
	금액	863,600	215,880	492,583	89,572	41%
주정차위반 과태료	건수			5,149	1,403	
	금액	720,000	180,000	213,130	58,060	32%
책임보험 과태료	건수			1,573	380	
	금액	80,000	19,980	120,323	10,032	50%
정기검사 과태료	건수			1,922	585	
	금액	60,000	15,000	156,670	19,590	130%
기타	건수			44	42	
	금액	3,600	900	2,460	1,890	210%

## □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

2001. 3. 31현재(단위 : 건,천원)

과 목		연간예산액 (A)	분기예산액 (B)	정 리 액			정리율 (C/B)
				계(C)	징수(D)	결손(E)	
계	건수			5,980	5,709	271	
	금액	559,200	139,800	250,751	241,621	9,130	179%
주정차위반 과태료	건수			5,672	5,401	271	
	금액	480,000	120,000	228,400	219,270	9,130	190%
책임보험 과태료	건수			187	187		
	금액	48,000	12,000	13,831	13,831		115%
정기검사 과태료	건수			112	112		
	금액	30,000	7,500	8,210	8,210		109%
기타	건수			9	9		
	금액	1,200	300	310	310		103%

우수사례 2인리-우|보노노채

~~공무원 및 일반 직장인 봉급 압류 통지~~

① 대 상 : 17,404건, 747,682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무원	1,691건	67,220천원	
일반직장인	15,713건	680,462천원	

② 추진사항

· 납부안내 및 압류예고통지 : 13,780건, 540,460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무원	1,691건	67,220천원	
일반직장인	12,089건	473,240천원	

· 채권압류통지 : 2,672건, 105,500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공무원	610건	23,170천원	3/31 납기
일반직장인	2,062건	82,330천원	4/30 납기

③ 징수현황 : 3,253건, 126,050천원

구 분	건 수	비율	금 액	비율	비 고
공무원	1,454건	86%	57,170천원	85%	
일반직장인	1,799건	11%	68,880천원	10%	

문제점

○ 공무원 및 일반 직장인 봉급 압류 통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 예상

개선대책

○ 2001년 제1회 추경시 예산편성

구 분	건 수	일반우편	등기우편	금 액	비 고
계		4,710,870원	11,743,290원	16,454천원	
공무원	1,691건	2,301×170=391,170원	610×1,170=713,700원	1,105천원	
일반직장인	15,713건	25,410×170=4,319,700원	9,427×1,170=11,029,590원	15,349천원	

문서번호	건설13388-
보존기간	10년
보고일자	2001. 4.
공개여부	

## 2001. 1/4分期 稅外收入 推進實績 報告書

### - 건 설 과 -

□ 2001회계년도 세입현황(2001. 1. 1 ~ 3. 31)

2001. 3. 31현재(단위 : 건, 천원)

과 목	연간예산액 (A)	분기별예산액 (B)	부과액 (건수)	징수액 (C)	세입률 (C/B)
합 계	2,610,500	1,450,000	1,833,006 (1,631)	1,426,038 (1,208)	98.4%
도로사용료	1,550,000	985,000	1,339,016 (1,090)	1,049,544 (848)	106.5%
하천사용료	25,000	18,000	14,142 (56)	10,168 (37)	56.5%
무단점용과태료	6,500	1,500	8,680 (75)	3,260 (38)	217.3%
구거사용료	396,000	285,000	306,643 (320)	198,541 (195)	69.7%
원인자부담금	630,000	160,000	164,430 (78)	164,430 (78)	102.7%
기타잡수입	3,000	500	95 (12)	95 (12)	19.2%

## □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2001. 3. 1~ 31)~

(2001. 3. 31현재 단위 : 천원)

과 목	총체납액	연간정리액(A)	월별징수액 (B)	정리액			정리율 (C/B)
				계(C)	징수(D)	결손(E)	
합 계	1,005,199 (1,605)	301,559	25,129	8,604	8,604	-	34.2%
도로사용료	599,709 (842)	208,571	17,381	5,434	5,434	-	31.3%
하천사용료	163,753 (305)	32,751	2,729	200	200	-	8.7%
무단점용 과 태 료	41,890 (290)	9,462	788	610	610	-	77.4%
구거사용료	103,992 (144)	36,397	3,033	1,260	1,260	-	41.5%
기타잡수입	95,855 (26)	14,378	1,198	1,100	1,100	-	95.1%

※ 2월28일 결손현황 : 93,167천원(222건)

2001년도 체납정리 목표 : 총체납액의 30%(301,559천원)

## □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 고지서 반송분 엑셀입력관리 : 고지서 전달의 정확성 제고로 체납 및 민원발생요인 최소화
- 보차도 점용(신규)허가시 사업장 상호(법인명)등재 : 징수관리 용이
- 민원불편 최소화 및 체납정리 활성화를 위해 통장입금 계좌개설
- 전화민원 엑셀 입력관리 : 점용변경 사항 확인 대장정리

##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① 재산 및 주소 조회, 차량조회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체납정리 및 압류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 : 권한부여 바람
- ② 기존 점용허가(도로·하천·구거 등) 연장자에게도 관허사업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절차이행을 원하는 사람에게 변상금(정상 사용료의 120%)을 부과하게 되어 오히려 신규체납 발생요인이 됨

## 2001. 1/4분기 세외수입 추진실적 보고서

- 도시개발과 -

2001회계년도 세입현황

2001. 3. 31현재(단위 : 건, 천원)

과목	연간예산액 (A)	월별예산액 (B)	부과액	징수액 (C)	세입률 (C/B)
합 계	142,000	-	-	-	-
공유재산 임대료	100,000	-	-	-	-
기타 징수교부금수입	42,000	-	-	-	-

과년도 채납액 정리현황

과목	연간정리액 (A)	월별정리액 (B)	정리액			정리율 (C/B)
			계(C)	징수 (D)	결손 (E)	
		해당사항	없음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문제점 및 개선대책

- 공유재산임대료(다대포항 터미널 주변 관광편의시설 임대료)는 부지협약이 지연되고있어 사업이 불투명한 실정임

# 2001.1/4分期 稅外收入 推進實績 報告書

## -허가민원과-

□ 2001 회계년도 세입현황

2001. 3. 31 현재(단위 : 건, 천원)

과 목	연간예산액 (A)	월별예산액 (B)	부과액(건수/금액)		징수액(건수/금액) (C)		세입율 (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60,000	5,000	83	260,960	9	11,707	220%
이행강제금	50,000	4,160	73	236,395	7	8,448	200%
과태료	10,000	840	6	24,565	2	3,259	380%

※과년도 제외  
※단위는 건수 및 금액을 동시 표기

□ 과년도 세입현황

2001. 3. 31 현재(단위 : 건, 천원)

과 목	연간정리액 (A)	월별정리액 (B)	정 리 액(건수/금액)			정리율 (C/B)	
			계(C)	징수(D)	결손(E)		
합 계	200,000	16,600	22	14,967	22	14,967	90%
이행강제금	170,000	14,100	2	13,967	22	13,967	99%
과태료	30,000	2,500	0	1,000	0	1,000	40%

※단위는 건수 및 금액을 동시 표기

□ 우수사례 및 특수 시책

○ “체납자 징수 카드제” 운영

▷ 운영방법

- 매월 체납 징수 담당자 지정 관리 : 참여직원 28명 , 관리대상인원 총 250명
- 장기, 고액 체납자 체납 사유 파악 분석
- 체납자 전출입, 소유주 변동 , 사망등 건축주 변동 사항 파악 관리

▷ 추진사항

- 직원별 매월 2회 이상 체납자 동향 파악 , 변동사항 정리

○ “이행강제금 고지시 납부 안내문 동봉 발송” - 분할납부 등



##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 問題點

- 구평동 성화원(음성 나환자 촌)의 납세 기피로 체납액 누적
  - ▷ 체납현황 : 14명, 13억원 (전체 체납액의 30%)
- 사회 전체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영세서민들의 생계 곤란으로 납부의지 상실
- 매년 반복 부과됨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중도에 납세 포기

### ○ 向後 對策

- 매월 1회(수시) 전국재산 및 차량 조회를 통한 압류확행
- 고질고액(천만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통보
- 장기 체납자들에게는 분기 1회,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
- 5년 이상 장기 체납 무재산자들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분납유도

## 2001. 1/4 分期 稅外收入 推進實績 報告書

— 지 적 과 —

## □ 2001 회계연도 세입현황

2001. 3.31현재(단위 : 건, 천원)

과 목	연간예산액 (A)	월별예산액 (B)	부과액	징수액 (C)	세입율 (C/B)
합 계	198,952	44,627	6,684 40,045	6,684 40,045	89.7%
수수료수입	98,952	24,738	6,680 20,126	6,680 20,126	
부 담 금	100,000	19,889	1 19,889	1 19,889	
잡 수 입			3 30	3 30	

※ 수수료 : 중지수입 (도시계획확인원 6,536건 6,536천원, 건축물관리대장 등 144건 13,590천원)

부담금 : 개발부담금 1건 19,889천원(완납) 잡수입 : 체납처분수입 3건 30천원

## □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

2001. 3.31현재(단위 : 건, 천원)

과 목	연간목표액 (A)	월별목표액 (B)	정 리 액			세입율 (C/B)
			계(C)	징수(D)	결손(E)	
합 계	10 5,000	4 3,000	1 2,400	1 2,400	.	80.0%
과 태 료	9 2,600	3 600	.	.	.	.
잡 수 입	1 2,400	1 2,400	1 2,400	1 2,400		

※ 과태료 :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 (총 21건 7,700천원)

잡수입 :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관련 승소비용 (1건 2,400천원)

##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실명법위반과징금 압류물건이 교회재산으로 재산처분 곤란
- 중개업법위반과태료는 21건중 8건이 압류된 채 폐업한 경우로써 징수 애로
  - 영업중인 체납자에 대한 지속독려로 연도내 징수조치 > 9건 2,600천원

※ 압류 12건(폐업 8, 영업중 4), 미압류 9건(폐업 4, 영업중 5)

## □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 개발부담금 체납액 1건 완납 조치 : 1건 19,889천원 (2001.2.28납부완료)
  - '99.12.15~2001.2.28까지 총 징수액 : 251,284천원 (區수입 99,105천원)

# 2001. 1/4分期 稅外收入 推進實績 報告書

- 보 건 소 -

## □ 2001회계년도 세입현황

2001.3.31현재(단위 : 건,천원)

과목	연간예산액 (A)	월별예산액 (B)	부과액	징수액 (C)	세입률 (C/B)
합계	497,782	41,480	173/92,736	167/90,136	217%
213-01 증지수입	78,000	6,500	73/20,130	73/20,130	310%
213-04 기타수수료	403,782	33,648	83/60,036	83/60,036	178%
228-04 과태료수입	8,000	666	14/6,000	8/3,400	511%
228-09 기타잡수입	8,000	666	3/6,570	3/6,570	986%

## □ 과년도 채납액 정리현황

2001.3.31현재(단위 : 건,천원)

과목	연간정리액 (A)	월별정리액 (B)	정리액			정리율 (C/B)
			계(C)	징수(D)	결손(E)	
228-04 과태료수입	7/3,900	1/325	1,000	1,000	0	308%

## □ 우수사례 및 특수사례

보건소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11,000천원)으로 전국적 담당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채납액 징수제고

(과년도 채납액 : 9건/4,000천원, 현년도 채납액 : 6건/2,600천원)

##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의약분업 시행후 환자진료수입예산이 569,040천원으로 감소되었음  
(2000년도 727,920천원, 2001년도 158,880천원)

○ 보건기관의 수가체계가 현재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고시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제로 전환되어 시에서 수가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정비후에는 감소된 세입이 보전될 것으로 예상됨

문서번호	세무13388-5567
보존기간	3년
결재일자	2001.11.23
공개여부	

◎담당	과 장	국 장	부구청장	구청장
<i>김명준</i>	<i>구동익</i>	<i>유영환</i>	전결	<i>김명준</i>
협 조	★담당자 김명준			

2001. 11

# 세 외 수 입 징 수 실적 보고 자료

- 일시 : 2001. 11. 23. 13:30
- 장소 : 부구청장실
- 주제 : 부구청장
- 참석(보고자) : 해당과장
- 내용
  -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 목표액달성 전망및 대책

稅 務 課

## 稅外收入 徵收 推進 狀況

### □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세입예산(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B)	세입률 (B/A)	결산전망액
	년간(A)	10월까지				
계	25,249	22,282	37,098	23,643	93.6	26,202
구세외	21,998	19,642	31,963	20,592	93.6	22,383
시세외	2,051	1,760	3,412	1,690	82.3	2,185
주정차	1,200	880	1,723	1,361	113.4	1,634

### □ 총평

- 10월까지 세입예산목표액 22,282백만원 대비 실제 징수실적은 23,643백만원으로 6.1% 초과 달성하였으나 부과대비 징수실적은 63.7%로 저조하여 체납액(13,455백만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구세외수입은 '2000 시세징수교부금 정산분 187백만원 추가교부 및 과태료징수활동 강화로 4.8% 초과달성하였음
- 시세외수입은 현년도 도로사용료 징수부족 등으로 3.9%를 부족달성하였음
- 연간세입 달성(초과)부서
  - 총무과,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
- 연간세입 미달부서
  -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보건소

### □ 추진상 문제점

- 세외수입은 소액과태료등 부과대상이 많아서 자진납부 않을시에 체납처분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이행강제금 체납자들은 대부분 영세서민으로 납부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

### □ 향후 추진 계획(대책)

- 세외수입 부과시 완벽한 부과자료 확보 및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
- 체납원의 정밀분석, 징수가능여부 판단 및 자료관리 철저
  - 유자산자 체납처분 강화 : 전국자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통한 자산압류등
  - 무재산, 시효소멸등 실익이 없는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 徵收官 部署別 推進 狀況

(단위: 천원)

구분	연간예산액 (A)	부과액	징수액 (B)	세입률 (B/A)	결산전망액	비고
계	16,667,232	17,046,920	14,544,062	87.2	17,601,003	
총무과	125,000	148,537	125,022	100.0	170,937	
재무과	567,292	749,514	515,882	90.9	627,275	
세무과	3,658,864	3,200,962	3,200,962	87.4	3,758,675	
문화공보과	311,000	415,428	305,564	98.2	385,478	
사회복지과	101,485	118,859	79,676	78.5	114,640	
환경청소과	4,526,500	4,292,724	4,199,906	92.7	4,729,300	
지역경제과	23,000	32,732	30,287	131.6	35,694	
교통행정과	1,984,280	2,782,489	1,692,977	85.3	2,066,569	
건설과	4,082,059	3,725,199	3,266,152	80.0	4,337,030	
도시개발과	142,000	-	-	-	42,000	
허가민원과	260,000	828,186	471,456	181.3	561,456	
지적과	206,952	147,834	95,722	46.2	169,864	
보건소	578,000	604,456	560,456	96.9	602,085	

※ 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 제외

“ 나의 친절 기쁨주고 나의 봉사 웃음준다 ”

# 稅外收入 推進實績 報告書

- 稅務課 -

## 2001회계년도 세입현황(2001.1.1 ~ 10.31)

(단 위: 건, 천원)

과목	연간예산액 (A)	부과액	징수액 (B)	세입률 (B/A)	결산전망액
합계	3,658,864	3,200,962	3,200,962	87.4	3,758,675
증 지 수 입	705,000	605,746	605,746	85.9	706,746
시세징수교부금	2,353,864	2,098,294	2,098,294	89.1	2,500,353
공공예금이자수입	600,000	496,922	496,922	82.8	551,576
	이	하	여	백	

### 결산전망부족과목 징수대책

공공예금이자수입 : 추경반영 목표액 수정

# 稅外收入 推進實績 報告書

## - 財 務 課 -

### ■ 2001회계년도 세입현황(2001. 1. 1~10.31)

(단위:천원)

과 목	연간예산액 (A)	부과액	징수액 (B)	세입률 (B/A)	결산전망액
합 계	514,292	714,181	476,442	92.6	584,275
국유재산임대료	60,000	63,536	63,536	106	69,107
공유재산임대료	79,600	50,886	50,886	64	59,972
국유재산매각수입	91,371	121,571	121,571	133	130,837
공유재산매각수입	83,321	26,069	26,069	31	103,979
변 상 금	200,000	452,119	214,380	107	220,380

### ■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2001. 1. 1~10.31)

(단위:천원)

과 목	총체납액	연간정리 목표액(A)	정 리 액			정리율 (B/A)	결산전망액
			계(B)	징수(C)	결손(D)		
합 계	814,000	53,000	39,440	39,440		75	43,000
변상금	814,000	53,000	39,440	39,440		75	43,000

### ■ 결산전망 부족과목 징수대책

- 국유재산매각수입 등 대부분 세입예산초과달성이 예상되나 (주)한진해운에서 컨테이너적치장으로 대부사용하던 다대동1571번지 3,519m<sup>2</sup> 시유지를 시에서 매각하여 공유재산임대료 감소가 예상된다.
- 변상금체납액 징수가 다소 미흡하였으나 독촉장발송, 수시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로 체납변상금징수에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자 대부분이 무재산의 영세한 자로서 자금력이 부족하여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국·공유재산관련 세입예산은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액대비 114%초과달성이 예상되며 구세입증대에 기여함.



# 稅外收入 推進實績 報告書

- 文化公保課 -

## ■ 2001회계년도 세입현황(2001. 1. 1 ~ 10.31)

(단위 : 건, 천원)

구분	연간예산액 (A)	부과액	징수액 (B)	세입률 (B/A)	결산전망액
합계	258,000	2,189 380,095	1,399 299,679	116	312,047
도로공간사용료	138,000	2,058 193,958	1,282 116,892	84.7	124,260
기타잡수입	120,000	131 186,137	117 182,787	152	187,787

## ■ 과년도 채납액 정리현황(2001. 3. 1 ~ 10.31)

(단위 : 건, 천원)

채납액	연간정리 목표액(A)	정리액			정리율 (B/A)	결산 전망액
		계(B)	징수(C)	결손(D)		
2,700	902	1,100	40	1,060	115	73,431
304,900	53,000	61,249	5,885	55,364		

## ■ 결산전망부족과목 징수대책

### ○ 2001년도 도로공간사용료 징수대책

- 급년도 채납분 독촉장 발송 ▶ 2001. 11. 22 발송(466건 42,718천원)
- 번상급 채납분 독촉장 발송 ▶ 2001. 11. 23 발송(209건 18,036천원)
- 동별 담당직원을 지정 책임 징수 : 전화, 방문 독려

### ○ 과년도 채납액 정리실적 제고 방안

- 과년도 채납분 독촉장 발송 ▶ 2001. 11. 22 발송(1,002건 157,429천원)
- 30만원이상 채납자에 대한 별도 신산관리
  - 진산입력완료(Exel) : 209명 117,077천원(과년도채납분의 74%)
- 고액채납자에 대한 담당직원 지정 책임 관리
  - 자체 일일징수독려사항 보고 확행
  - 50만원이상 고액채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유도
- 인상·각종 히가시 채납액 징수 후 허가
- 폐업, 이전 등으로 인한 간판 철거분에 대하여 감액 조치

# 稅外收入 推進實績 報告書

## 【社會福祉課】

### □ 2001 회계년도 세입현황

기간 : 2001.1.1~10.31

(단위 : 건, 천원)

과 목	연간예산액 (A)	부과액	징수액 (B)	세입율 (B/A)	결산전망액
합 계	69,485	97,526	53,176	76.5	69,640
기타사용료 (이성회관 에식장사용료)	12,485	10,386	10,036	80.3	14,000
기타수수료 (이성회관 교육수강료)	15,000	24,140	24,140	160.9	24,140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42,000	63,000	19,000	45.2	31,500

### □ 과년도 채납액 정리현황

기간 : 2001.3.1~10.31

(단위 : 건, 천원)

과 목	총채납액	연간정리 목표액(A)	정 리 액			정리율 (B/A)	결 산 전망액
			계(B)	징수(C)	결손(D)		
합 계	319,500	32,000	26,500	26,500		82.8	45,000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19,500	32,000	26,500	26,500		82.8	45,000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액 정리대책

○ 체납사유 분석

-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관된 '99.7.1이전의 고질적 체납액이 전체 체납금액의 55%(175,000천원)를 차지
- 체납자 구성비가 구멍가게, 동네슈퍼, 소규모식당 등 영세업주가 대부분(80%)
- 8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 > 13명 167,000천원(인원대비 7.7%, 금액대비 52.2%) > 징수율 저조

○ 징수율 제고대책

- 독촉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 > 상·하반기 2회, 182명
- 전국재산조회 결과 재산소유자(부동산, 자동차) 압류조치 > 48건 126,000천원
- 2001.8.25 정보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분할납부제도 활용안내
  - > 2001.10.31현재 12명 15,000천원 분납승인, 납부중
-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점검시 체납자 업소방문, 납부독려 : 월3회

# 稅外收入 推進實績 報告書

## -環境清掃課-

□ 2001회계년도 세입현황 (2001. 1. 1 ~ 10. 31)

(단위 : 천 원)

과목	연간예산액 (A)	부과		징수		세입률 (B/A)	결산 진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B)		
합계	4,482,500	18,282	4,263,391	17,719	4,187,566	93.4	4,693,500
쓰레기봉투판매	3,976,000	7,683	3,523,686	7,683	3,523,686	88.6	4,000,000
지활송-폼수거판매	75,600	22	73,825	22	73,825	97.6	88,000
음식물쓰레기전표	320,000	1,479	390,824	1,479	390,824	122.1	400,000
다형쓰레기수거	50,400	7,919	61,271	7,919	61,271	121.5	73,000
무단투기과태료	35,000	955	79,100	475	47,450	135.5	50,000
환경관련과태료 (매연, 성화조)	25,500	224	134,685	141	90,510	354.9	106,500

□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 (2001. 3. 1 ~ 10. 31)

(단위 : 천 원)

과목	총체납액	연간정리 목표액(A)	정리액			정리율 (B/A)	결산 진방액
			계(B)	징수(C)	결손(D)		
합계	144,547	44,000	27,520	12,340	15,180	62.5	35,800
폐기물관련과태료	51,755	16,000	16,180	1,000	15,180	101	18,000
환경관련과태료 (매연, 성화조)	92,792	28,000	11,340	11,340		40.5	17,800

□ 결산진방부족과목 징수대책

- 체납액 특별징수팀 운영 (3개팀 6명) : 방문및 전화납부독려
- 특속고지서 일제발송 (11월중) : 무단투기과태료 등 988건
- 징수불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확정

# 稅 外 收 入 推 進 實 績 報 告 書

- 交 通 行 政 課 -

□ 2001년도 세입현황(2001. 1. 1 ~ 10.31)

(단위 : 건, 천원)

과 목	인간예산 액 (A)	부과액		징수액 (B)		세입율 (B/A)	실산전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	
총 계	1,984,280	190,983	10,214,702	153,890	2,177,170	110%	2,647,589	133%	
일반회계	총 계	257,700	37,888	4,093,522	8,459	331,000	128%	432,199	168%
	책임보험	80,000	4,909	370,239	2,411	76,476	96%	91,771	115%
	장기검사	60,000	5,045	423,075	2,590	94,522	158%	113,426	189%
	기 타 (이: 사, 동구사업비(위반 등))	3,500	227	18,430	212	13,130	375%	15,756	450%
	세입차분비	3,000	1,642	8,285	1,644	8,285	276%	9,942	330%
	과년도수입	79,200	26,065	3,241,493	1,602	138,587	175%	166,304	210%
	징수교부금	32,000	-	32,000	-	-	0%	35,000	109%
특별회계	총 계	1,726,580	153,095	6,121,180	145,431	1,846,170	107%	2,215,390	128%
	주정차과대료	720,000	33,882	1,403,270	15,717	646,900	90%	776,280	108%
	공용주차장 입탁사용료	83,100	19	183,238	19	183,238	220%	219,880	265%
	주거지전용 주차장사용료	31,480	606	32,886	606	32,886	104%	39,460	125%
	세입차분비	48,000	11,402	57,050	11,402	57,050	119%	68,460	143%
	과년도수입	480,000	107,156	4,233,716	117,657	715,076	149%	858,090	178%
	이자수입	364,000	30	211,020	30	211,020	58%	253,220	69.6%

\* 일반회계 과오납 총액 : 904천원

\* 특별회계 과오납 총액 : 944천원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10월말) : 352,192천원

□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 (2001. 3. 1 ~ 10. 31)

(단위 : 천, 천원)

과목	총체납액		인간 목표액 (A)	정리액						정리률 B/A	결산진행	
	건수	금액		계(B)		징수(C)		결손(D)			금액	%
합계	130,257	7,498,491	559,200	19,761	869,993	19,277	853,663	484	16,330	155%	1,304,989	233
채널 보형	13,674	1,773,421	48,000	925	72,277	925	72,277	-	-	150%	108,415	225
정기 검사	7,900	1,318,995	30,000	645	65,000	645	65,000	-	-	216%	97,500	325
기타 이종 채널 채널 채널	1,372	171,769	1,200	32	1,310	32	1,310	-	-	109%	1,965	163
주차장 주차장 특별 회계)	107,311	4,234,306	480,000	18,159	731,406	17,675	715,076	484	16,330	152%	1,097,109	225

※ 총체납액 : 2001년도에 이월된 체납금액임.

□ 결산진행 부족과목 징수대책

( 일반회계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0월말 징수액

(352,192천원)기준의 10%인 35,000천원 세입 예상되며

( 주차장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을숙도 주차장 매입으로

인한 적립금 감소 및 금리 인하로 인하여 당초 364,000천원의

69.6%인 253,220천원 세입예상으로 110,780천원 부족

# 稅外收入 推進實績 報告書

- 建設課 -

## ㉑ 2001회계년도 세입현황 (2001. 1. 1 ~ 10. 31)

(단 위 : 건, 천원)

과목	연간예산액 (A)	부과액	징수액 (B)	세입률 (B/A)	결산 전망액	
합계	3,780,500	3,524,160	3,163,154	83.67	4,071,530	
기 세 외	도로사용료	1,550,000	1,562,398	1,342,474	86.61	1,535,000
	하천사용료	25,000	17,726	13,694	54.77	16,300
	부단점용과태료	6,500	54,510	17,590	270.61	32,200
구 세 외	원인자부담금	1,800,000	1,615,287	1,615,287	89.73	2,300,000
	구거사용료	396,000	265,816	171,180	43.22	185,000
	기타잡수입	3,000	8,423	2,929	97.63	3,030

## ㉒ 과년도 채납액 정리현황 (2001.3.1~10.31)

(단 위: 건, 천원)

과목	총채납액	연간정리 목표액(A)	정리액			정리율 (B/A)	결산 전망액	
			계(B)	징수(C)	결손(D)			
총계	1,005,199	301,559	102,998	102,998	-	34.15	265,500	
기 세 외	도로사용료	599,709	208,571	53,079	53,079	-	25.45	157,000
	하천사용료	163,753	32,751	9,855	9,855	-	30.01	28,000
	점용과태료	41,890	9,462	5,660	5,660	-	59.81	9,600
구 세 외	구거사용료	103,992	36,397	18,137	18,137	-	49.83	34,300
	기타잡수입	95,855	14,378	16,267	16,267	-	113.13	36,600

### ㉒ 결산전망부족과목 징수대책

#### 1. 징수독려반 편성운영

가. 기 간 : 1 차 - 2001. 5. 1 ~ 2001. 6. 30  
2 차 - 2001. 11. 1 ~ 2002. 2. 28

나. 편 성 : 5개반 30명

다. 1차독려반실적: 715건 214백만원

○ 징 수 - 421건 124백만원 ○ 납부약속 - 294건 90백만원

라. 활 동 : 전화독려 및 현장방문

#### 2. 징수활동 강화

가. 독촉고지서 발송 (1,786건 1,253백만원)

○ 대 상 : 현년도 432건 361백만원, 과년도 1,354건 892백만원  
○ 조 치 : 현재까지 3회발송, 추후 추가발송예정

나. 체납자 채권확보

○ 대 상 : 부동산, 차량, 전화가입권등  
○ 방 법 : 세무과 재정정보시스템·차량단말기·전국재산조회등  
을 통한 재산유무 파악한 후 압류실시

○ 실 적 : 217건 219백만원 (과년도포함: 568건 613백만원)

▷ 부동산 - 35건 47백만원 (과년도포함 : 182건 291백만원)

▷ 차 량 - 182건 172백만원 (과년도포함: 386건 322백만원)

○ 금후계획 : 체납자에 대한 압류지속 실시

다. 결손처분실시

○ 대 상 : 무재산자·행방불명·소멸시효대상자등

○ 내 용 :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 결손처분실시

#### 3. 문 제 점

가. 체납자 조회 및 채권확보 신속처리 곤란

○ 현 황 : 체납자조회프로그램이 미설치되어 체납자조회시 일  
일히 타부서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채권확보곤란

○ 건 의 : 재정정보시스템 및 자동차관리프로그램 이용가능도  
록 설치



# 稅外收入 推進實績 報告書

## - 許可民願課 -

### ■ 2001회계년도 세입현황 (2001.1.1 ~ 10.31)

(단위 : 건, 천원)

과 목	연간예산액 (A)	부과액	징수액 (B)	세입률 (B/A)	결산전망액
합계	60,000	321/694,853	223/325,795	542	50/60,000
이행강제금		280/650,053	179/277,911		
과 태 료		12/44,530	15/47,614		
채납처분비		29/270	29/270		

### ■ 과년도 채납액 정리현황 (2001. 3.1 ~ 10.31)

(단위 : 건, 천원)

과 목	총채납액	연간정리 목표액(A)	정리액			정리율 (B/A)	결 산 전망액
			계(B)	징수(C)	결손(D)		
합 계	1,035/4,395,360	200,000	135/331,563	90/145,661	45/185,902	165	20/30,000
이행강제금	896/3,909,814		127/310,773	82/124,871	45/185,902		
과태료	139/485,546		8/20,790	8/20,790			

### ■ 결산진망부족과목 징수대책

- ( ) 현년도 부과채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등 채납처분  
확행으로 징수유도
- ( ) 과년도 채납액은 채납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독려(11,12월 집중독려)
- ( ) 채납 안내문을 발송
- ( ) 5년이상 차납자로서 납부불능자(무재산자, 행불등)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
- ( ) 고액채납자에 대한 분납유도

## 稅外收入 徵收實績 報告書

— 지 적 과 —

2001 회계년도 세입현황(2001. 1. 1~10.31)

(단위:건/천원)

과 목	인간예산액 (A)	부과액	징수액 (B)	세입률 (B/A)	결산전망액
합 계	201,952	77,487 / 144,501	77,485 / 72,933	36%	165,664
수수료수입	98,952	77,481 / 71,873	77,481 / 71,873	100%	91,036
부 담 금	100,000	3 / 71,568	1 / 19,889	19.9%	71,568
잡 수 입	3,000	3 / 1,060	3 / 1,060	35.3%	3,060

○ 수수료 수입내역

- 재증명 수입 : 56,155건 48,873천원
-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수입 : 21,326통 23,000천원

○ 부담금 수입내역

- 징수액 1건 : 19,889천원 (부산백시노동조합)
- 미징수액 2건 51,679천원은 남기가 2001. 8.27~2002. 2.26까지로써 “남기 미도래”  
이나 회계연도말까지 납부가 예상된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2001. 3. 1~10.31)

(단위:건/천원)

과 목	총체납액	연간정리 목표액(A)	정 리 액			정리율 (B/A)	결산전망액
			계(B)	징수(C)	결손(D)		
합 계	201,445	5,000	3 / 2,900	3 / 2,900		58%	4,200
과태료	33,674	2,600	2 / 500	2 / 500			1,800
잡수입	2,400	2,400	1 / 2,400	1 / 2,400			2,400
과징금	165,371						

결산전망 부족과목 징수대책

- (C) 미압류자, 진국제산조회후 확인제산 압류 및 통지 (미압류자:총12건)
- (C) 독촉고지서 발부 ▷ 12월초 1회 (2001년 누계 : 5회)